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재호의원 대표발의)

| | |
|----------|------|
| 의안 번호 | 9364 |
|----------|------|

발의연월일 : 2021. 4. 8.

발 의 자 : 송재호·김영배·남인순
박성준·안호영·이상현
이용빈·이원택·정성호
한준호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정한 하도급거래질서를 확립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며 균형 있게 발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개별 수급사업자가 직접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 조정신청을 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고,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의 경우에는 조합에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의 경우에는 적절한 조력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시·도지사에게 원사업자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수급사업자의 보호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제4항 신설 등).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2제4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2항”을 “제2항 및 제4항”으로,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을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으로, “제3항까지의”를 “제4항까지의”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본문에”를 “본문 및 제4항 전단에”로, “조합”을 “조합과 시·도지사”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를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포함”을 “포함하고,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의 경우 시·도지사를 포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조합은”을 “조합과 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제2호 및 제3호 중 “제1항 또는 제3항”을 각각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으로 한다.

- ④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9조 중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를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조정신청”을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으로, “제8항”을 “제9항”으로 한다.

제24조의4제1항 후단 중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에 따른 조합”을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을 “제16조의2제9항에 따라 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는 시·도지사”로 한다.

제25조제1항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5조의3제1항제6호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제30조제1항제4호 중 “제16조의2제7항”을 “제16조의2제8항”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 현 행 | 개 정 안 |
|--|--|
| <p>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생략)</p> <p><u><신설></u></p> | <p>제16조의2(공급원가 등의 변동에 따른 하도급대금의 조정) ① ~ ③ (현행과 같음)</p> <p><u>④ 조합의 조합원이 아닌 수급사업자는 목적물등의 공급원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변동되어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이 조에서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신청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p> |
| <p>④ 제1항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가 <u>제2항에 따른 협의를 신청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은 중단된 것으로 보며, 제1항 또는</u></p> | <p>⑤ -----</p> <p>-----</p> <p><u>제2항 및 제4항</u>-----</p> <p>-----</p> <p>-----<u>제1항, 제3항</u></p> |

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를 완료된 경우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은 사정변경이 없는 한 동일한 사유를 들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조정협의를 신청할 수 없다.

⑤ (생략)

⑥ 제2항 본문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 수급사업자의 신청 및 조합의 협의권한 행사의 요건·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⑦ 원사업자는 제1항 또는 제3항의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 안에 조정을 신청한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과 하도급대금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하거나 게을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⑧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제3항에 따른 조정협의를의 경우 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

또는 제4항-----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
-----제4항
까지의-----
-----.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⑦ -----본문 및 제4항 전단에

-----조합과 시·도지사-----

-----.

⑧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와-----

-----.

⑨ -----

-----포함하고, 제4항에 따른 조정협의를의 경우 시·도지사를 포함-----

24조에 따른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에 따른 조합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에 설치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10일이 지난 후에도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위한 협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이 있는 날부터 30일 안에 하도급대금의 조정에 관한 합의에 도달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신청으로 인한 협의개시 후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가 협의 중단의 의사를 밝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합의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 또는 조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조합과 제4항에 따른 시·도지사는-----

-----.

1.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2.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3. 제1항, 제3항 또는 제4항-----

제19조(보복조치의 금지)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가 -----

하는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수주기회
(受注機會)를 제한하거나 거래
의 정지, 그 밖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생략)

2. 제16조의2제1항 또는 제2항
의 원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
금의 조정신청 또는 같은 조
제8항의 하도급분쟁조정협의
회에 대한 조정신청

2의2.·3. (생략)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분쟁당사자는 원사업
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하도급
거래의 분쟁에 대하여 협의회
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분쟁당사자가 각각 다른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한
때에는 수급사업자 또는 제3호
에 따른 조합이 분쟁조정을 신
청한 협의회가 이를 담당한다.

1.·2. (생략)

3. 제16조의2제8항에 따른 조합

-----.

1. (현행과 같음)

2. 제16조의2제1항부터 제4항까
지의 규정에 따른 신청 -----

제9항-----

2의2.·3. (현행과 같음)

제24조의4(분쟁조정 신청 등)

① -----

-----.

-----수급사업자, 조합 또는
시·도지사가-----
-----.

1.·2. (현행과 같음)

3. 제16조의2제9항에 따라 협의
회에 조정을 신청한 조합 또

1. ~ 5. (생략)

6. 제15조, 제16조,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② (생략)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생략)

② 공정거래위원회는 제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9항, 제3조의4, 제4조부터 제12조까지,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3조, 제13조의2, 제14조부터 제16조까지, 제16조의2제7항 및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원사업자 또는 수급사업자에 대하여 그 위반 및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을 부과하고, 그 벌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영업정지, 그 밖에 하도급거래의 공정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하여

1. ~ 5. (현행과 같음)

6. -----제16조의2제8항-----

② (현행과 같음)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6조의2제8항-----

야 한다.

제30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제조등의 위탁을 한 하도급대금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3. (생략)

4. 제16조의2제7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협의를 거부한 자

②·③ (생략)

-----.

제30조(벌칙) ① -----

-----.

1. ~ 3. (현행과 같음)

4. 제16조의2제8항-----

②·③ (현행과 같음)